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4일, 양부남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11. 21.)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6.)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양부남의원)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라 함)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불법정보에 마약류 정보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불법정보의 경우와 달리 별도로 호를 신설하여 불법정보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등과 마약류 정보의 성격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현행 조문의 취지 및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여 보호조치 명령의 주체에 국가정보원장등을

추가하고, 조문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의 정의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수정).

「전기통신사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여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벌칙 및 몰수·추징 부분은 제외함(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삭제, 안 제75조의2 수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마약류”로 한다.

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74조제1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안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7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 -----.
1. ~ 6의3. (생략) <u><신설></u>	1. ~ 6의3. (현행과 같음) <u>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1. ~ 6의3. (개정안과 같음) 6의4. ----- ----- ----- --- <u>마약류</u> ----- ----- ----- -----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7. ~ 9. (개정안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u>제6호의</u>	② ----- ----- ----- <u>제6호</u>	② (개정안과 같음)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wo vertical columns of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for practicing letter formation. The left column contains 10 rows of dashed lines, and the right column also contains 10 rows. A solid vertical line runs down the center, separating the two columns. The paper is otherwise blank, with no text or other markings.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	-------------------

4.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하는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
마의 사용, 제조,

②・③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4. ~ 7. (생략)	<u>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를 위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u>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4. ~ 7. (개정안과 같음)
---	--	--

② (생략) 제75조의2(몰수·추징) <u>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음)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추징) <u>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7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u>----- ----- ----- ----- ----- ----- ----- ----- ----- -----.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75조의2(몰수·추징) (현행과 같음)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한다.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략) <u><신설></u> 7.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u>제6호의2 및 제6호의3</u> 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제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u>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7. ~ 9. (현행과 같음) ② ----- ----- <u>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6호의4</u> ----- ----- ----- ----- ----- ----- ----- ----- ----- -----

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